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14-111
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판매사업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, 고압가스 판매소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“가스사업 등”을 규정(안 제2조)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·판매사업, 충전사업자의 영업소
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소

나.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규정(안 별표 1 및 별표 2)

허가대상	규정사항	비고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	사업소의 부지, 안전거리	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2배 이내로 규정
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	사업소의 부지, 용기보관실, 사무실, 부대설비	
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	사업소의 부지, 용기보관실, 사무실	
고압가스 판매소	사업소의 부지, 용기보관실, 사무실, 부대설비	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(사업의 허가 등)
-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4. 10. 2. ~ 10. 22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부.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가스사업 등”이란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조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허가요건)**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은 별표 1, 별표 2와 같다.

### 부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## **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등 허가요건의 세부사항**

(제4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(공통사항)

「학교보건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건축법」, 「주택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
### 2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

시설기준	허가요건의 세부사항
가. 사업소의 부지 나. 안전거리	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·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·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3 제1호가목1)가)의 2배로 한다.

### 3.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

시설기준	허가요건의 세부사항
가. 사업소의 부지 나. 용기보관실 다. 사무실 라. 부대설비	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, 용기보관실 면적은 38㎡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, 사무실의 면적은 18㎡ 이상으로 할 것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㎡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

4.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

시설기준	허가요건의 세부사항
가. 사업소의 부지 나. 용기보관실 다. 사무실	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기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, 용기보관실 면적은 38㎡ 이상으로 할 것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, 사무실의 면적은 18㎡ 이상으로 할 것

[별표 2]

## 고압가스 판매소 허가요건의 세부사항

(제4조 관련)

### 1. 일반기준(공통사항)

「학교보건법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건축법」, 「주택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
### 2. 고압가스 판매소

시설기준	허가요건의 세부사항
가. 사업소의 부지	한 면이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
나. 용기보관실	가연성가스·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, 각각의 면적은 20㎡ 이상으로 할 것
다. 사무실	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, 사무실의 면적은 18㎡ 이상으로 할 것
라. 부대설비	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㎡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
마. 안전거리	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㎡(액화가스는 3톤)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1호가목1)가)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 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해당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  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 
미만인 경우 - 예산발생 사유 없음)

**3. 미첨부 사유**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과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
및 사업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  
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필요치 않아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자  
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2조제2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를 생  
략함.

**4. 작성자**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환경과 유화철
연 락 처	02-3153-9282